

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광성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15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2월 05일
발 의 자 : 이광성 의원(1명)
찬 성 자 : 강대호, 김기대, 김기덕,
김제리, 성흠제, 송명화,
송정빈, 오현정, 유정희,
최웅식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폐기물배출자, 재활용사업자 등의 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음으로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다양한 노력을 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·재활용사업자·제조사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신설함(안 제4조6제1항)
- 나.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,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 등 시장의 역할을 규정함(안 제4조의6제2항)
- 다.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신설함(안 제4조의6제3항)

라.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, 자발적 협약으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음을 신설함(안 제4조의6제4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6(자발적 협약의 체결)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·재활용사업자·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(이하 “자발적 협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
2.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
3.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
4.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, 자발적 협약으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4조의6(자발적 협약의 체결) ① 시장</u> <u>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</u> <u>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·</u> <u>재활용사업자· 제조자등 또는 이들</u> <u>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(이하 “자발적</u> <u>협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</u> <u>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</u> <u>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</u> <u>용 현황</u> <u>2.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</u> <u>한 목표 및 이행기간</u> <u>3.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목표</u> <u>이행을 위한 투자계획</u> <u>4.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</u> <u>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 <p><u>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</u> <u>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</u> <u>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</u> <u>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</u> <u>표 달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</u> <u>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, 자발적 협약</u> <u>으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</u> <u>할 수 있다.</u></p>

문서번호

2021012100000004

미참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이광성 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
민향식 팀장
공도연 예산분석관

접수일 : 2021.01.21

회신일 : 직접입력

내용문의 : 02-2180-7933

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참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참부 근거 규정
3. 미참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예산정책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의6에서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·재활용사업자·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(이하 “자발적 협약”이라 함)을 체결할 수 있고(제1항),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(제3항) 규정하여 이를 지원할 경우 비용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(2호) 사유

- 제4조의6 제3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지원할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없고, 자발적 협약에 따라 이행할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, 지원기준 등에 대해 정한 사항도 없어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조도형

예산분석팀장 민향식

분석관(주무관) 공도연

☎ 02-2180-7933

e-mail : ehds0@seoul.go.kr